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조오섭·강득구·김홍걸

문진석 · 민형배 · 박영순

송갑석 • 안민석 • 윤영덕

이용빈 · 인재근 · 조응천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(이하 "교통안전장치"라 함)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·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 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 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 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3 및 제65조제3항 신설 등).

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3(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)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 동차안전단속원 및 「도로법」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(이하 "교통안전단속원"이라 한다)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대상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 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
- 2.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가 대상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
-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

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제62조 중 "제34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·직원,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의 임·직원"을 "다음 각 호의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4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·직원
- 2.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교통안전단속원
- 3.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 된 전문기관·단체의 임·직원

제6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③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 ✓ 선 설>   착 여부에 관한 조사) ① 국토  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 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   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3조   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   속원 및 「도로법」 제77조제4   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(이   하 "교통안전단속원"이라 한다)   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수 있다.   1.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   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대상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
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행기록장치 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.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 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가 대상 차량에 차로

제62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제34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·직원, 제59조제3항에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의 임·직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<u>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</u> <u>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</u> 착하였는지 여부

-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 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> 1. 제34조제1항, 제3항 및 제5 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

<신 설>

<신 설>

제65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,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- 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 관의 임·직원
- 2.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를 수행하는 교통안전단속원
- 3.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 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의 임·직원

제65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.
- 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-----

-----,